



유진지수연계더블리자드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SHE-16호(USD)[ELS-파생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P268)

목 차

제	1	장	종 직
제	2	장	수익증권 등
제	3	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	4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5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6	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	7	장	수익자총회
제	8	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9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10	장	보칙
부		칙	





유진지수연계더블리자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SHE-16호 (USD)[ELS-파생형]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P268)

제정 2019.04.30. 개정 2019.09.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 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 업자인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 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 2.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 3.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EUREX증권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 의 동시 개장일을 말한다.
-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 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5.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6. "단위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7.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8. "사모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9.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10.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유진지수연계더블리자드전문투자형사 모증권투자신탁SHE-16호(USD)[ELS-파생형]'이라 한다.

②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1. 투자신탁
- 2. 증권(ELS-파생형)
- 3. 단위형
- 4. 개방형
- 5. 사모형
- 6.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③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



서 제출,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 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등 일반 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 **제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
 - 1.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 2. 원화환산 1억원(자금 납입일 USD기준환율 환산기준)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제3조의3(투자권유 등) ①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법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 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법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하고, 제26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고객에 게 설명하여야 한다.
-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②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05월 06일까지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 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된 제17조제1항제1호의 파생결합증권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당 상환대금이 **투자신탁에 입금되는 날의 익영업일까지**로한다.
-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센트(미국화폐단위인 cent,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



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조좌로 한다.

- 제7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 범위 내에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추가설정을 할 수 있다.
-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미국달러화)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u>미국달러화</u>)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 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 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09.23>
 -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u>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u>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 ③<삭제2019.09.23>
 - <u>④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개정2019.09.23>
-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2019.09.23>
-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2019.09.23>
- 제13조(수익권의 양도 등)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의 결과 법 제9조제19항에서 정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u>*개정2019</u>.09.23>

-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2019.09.23>
-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수익증권 양도시 양수인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u>수익자명부</u>)**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2019.09.23>
 -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19.09.23>
 -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 ⑥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9.09.23>
 - ⑦<삭제2019.09.23>
 -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2.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자산운용지시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 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 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미국 달러화(USD) 표시 파생결합증권</u>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 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u>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u>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 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2019.09.23>
 - 1.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중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로서 "S&P500 지수", "HSCEI 지수" 및 "EuroStoxx50 지수"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가. "S&P500 지수", "HSCEI 지수" 및 "EuroStoxx50 지수"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 <u>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u>다. 다음과 같은 손익구조를 가진 미국 달러화(USD)표시 파생결합증권
 - 1) 설정일 이후 매 6개월마다 도래하는 각 회차별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각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결정일의 기초자산의 각 종가(이하 "최초기준가격") 대비 순차적으로 [85%(6개월)-85%(12개월)-85%(18개월)-85%(24개월)-80%(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4.50% (USD, 세전)] 수준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되는 파생결합증권
 - 2) "1차 Lizard Event 조건" 충족시 2.25%(USD, 절대수익률) 수준(세전)의 수익률로 조기상환 ["1차 Lizard Event 조건"이란 1차 조기상환 평가일까지 "1)"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 기준가격결정일(불포함)로부터 6개월의 기준가격결정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 나라도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3) "2차 Lizard Event 조건" 충족시 4.50%(USD, 절대수익률) 수준(세전)의 수익률로 조기상환 ["2차 Lizard Event 조건"이란 2차 조기상환 평가일까지 "1)"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 기준가격결정일(불포함)로부터 12개월의 기준가격결정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 대비 7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5) 자동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로서,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각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65%] 이상인 경우 [연 4.50% (USD, 세전)] 수준 수익률로 만기수익상환
 - 6) 자동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로서,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 기준가격 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세 기초자산 중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 수익률 수준으로 원금손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2.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3. 금융기관에의 예치
-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 1.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 2. 제17조제2항 각 호의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3.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 4. 증권차입과 금전차입을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u>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4.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제2조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 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여 서는 아니 된다.
 -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및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예탁결제원을 통해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삭 제)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 ②<u>고객</u>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u>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달</u> <u>러화(USD)로만 매입신청이 가능하다. <개정2019.09.23></u>
 - ③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제1항에 따른 수익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 ③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8항에서 규정한 사모의 방법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
- 제25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수익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2제2호의 투자자는 투자자의 잔고(평가금액)가 제3조의2제2호의 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일부 환매를 청구할수 없다
 -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달러화(USD)로만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 ③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삭제2019.09.23>
 - ⑥<삭제2019.09.23>
 - ⑦<삭제2019.09.23>
-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 함하여 산정한다. <개정2019.09.23>
 -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u>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u>구시 제6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미국달러화)으로 지급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8조(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3.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 ④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⑤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한 사항
 - 나. 환매가격
 -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마.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⑦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 ⑧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 ⑨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3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 제29조(집합투자재산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미국달러화 기준, 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센트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 입하여 센트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u>1좌를 1센트로 하여 10</u>달러로 공고한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한다.
-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u>매 1년간으로</u>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제32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 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②이 투자신탁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이익금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금전(미국달러화)으로 지급한다.
 -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 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 제37조(수익자총회) 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와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이 투자신탁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 제39조(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u>매 6개월간</u>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투자신탁 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간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 2.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u>자신탁보수는 미국달러화(USD)로 지급한다.</u>
- **제40조(판매수수료)** 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선취로 취득할 수 있다.
 - ②선취로 취득하는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41조(환매수수료)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 ②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 1.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5%
 - 2. 6개월 이후부터 파생결합증권 상환 이전 환매시 : 환매금액의 3%
 -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6.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7.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8.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④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집합투자업자의 변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 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신탁업자의 변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3.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법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제46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 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개정2019.09.23>
-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시행령 제83조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0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공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또는 「상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시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갈음할수 있다.
- **제51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 **제53조(관련법령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4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 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민 호 (인)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 지배인 수탁사업부장 사 혜 난 (인)